

## 미 무역대표부,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여혁종  
(T. 570-4181, hyukjong@kisdi.re.kr)

### 1. 개 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의 63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sup>1)</sup> 무역장벽보고서는 각국의 수입정책, 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전반적으로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미 FTA 타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 타결 이후의 변화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sup>2)</sup>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무역장벽보고서와 실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분량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발표되는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2005년도 37페이지에서 2007년도 14페이지로 감소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sup>

2007년도 무역장벽보고서 중 IT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 2.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의 IT 분야 주요 내용

#### 가. 표준, 검사, 상표표시, 인증

USTR은 우리 정부가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컴퓨터, 의료기기, 통신기기 등 제품을 수

1)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집되는 불만사항과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며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예산관리국, 경제자문회의(CEA),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된다.

2) 무역장벽보고서 2007년 3월 31일 발간, 한미FTA 2007년 4월 2일 타결.

3) 연합뉴스, "KOTRA, 한미 FTA로 양국 간 통상마찰 감소될 것", 2007. 4. 9.

입하기 위해 “사전승인”(prior approval)을 요구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일부 제품에 한정해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군에 대해 사전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무역장벽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기술중립성 정책을 준수하고 무역 제한적인 표준을 수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sup>4)</sup> 또한 우리나라가 각종 최첨단 무선통신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 규정에 부합하는 표준과 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외국인 회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지적재산권 보호

2005년에 USTR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조정하였다. USTR은 개선사항으로 ① 인터넷을 통한 음반의 유포를 보호하는 법안의 도입, ② 불법복제영화의 유포를 억제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규정의 시행, ③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을 조사하는 상설단속반(Standing Inspection Team)의 집행력의 강화를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해지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영화와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우리나라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1> 지적재산권 관련 USTR 요구 및 지적사항

구분	USTR 요구 및 지적내용
일시적 복제 <sup>5)</sup>	○ 미국은 저작권자에게만 임시나 영구적인 복사물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
저작권법	○ 미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함 - 기술보호조치(TPMs)를 우회하는 조치를 금지 - 2003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조화를 이뤘으나 개선 사항이 존재 ○ 미국은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저작권법 27조와 71조의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예외 조항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미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사용 예외조항과 관련해서 저작권 작품을 디지털화하려면 최소 30일전에 저작권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

4) USTR은 우리 정부가 한국산 기술 표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관례가 포착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일시적 복제: 특정저작물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구분	USTR 요구 및 지적내용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저작권의 기한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이나 저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95년까지로 개정하기를 요구</li> </ul>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정보통신부에 추가 개정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복제물의 보호</li> <li>- 기술 보호 조치의 강화</li> <li>- 저작권 보호 기한 연장</li> <li>-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 중재를 임의관할권으로 변경</li> <li>- 민사·행정·형사재판의 사전요건으로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재 요건 폐기</li> <li>-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최소 처벌 조항 추가</li> <li>- TRIPs협정 규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민사상 강제조치에 강제적·일방적 구제조치의 존재를 명시할 것을 권고</li> </ul> </li> </ul>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외국인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불성실”하게 등록되는 상표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상표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미국 회사들이 동 절차를 회피</li> <li>-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특허청의 상표 검사와 심사 절차가 미비할 때, 외국인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된 상표들이 문제시 됨</li> </ul> </li> </ul>

하지만 이러한 개선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표 1>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서비스장벽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 제도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에 관한 통신망의 접속권과 사용권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였다.

#### 라. 전자상거래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고 분야별 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NGO들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법안을 요구하여 원활한 전자상거래가 방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마. 규제관련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구체성의 결여로 인해 관료들이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음을 비판하였다. 규제체계의 불투명성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 3. 결 어

〈표 2〉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와 한미 FTA 협상결과의 IT 분야 비교

무역장벽보고서 IT 분야 지적 내용		한미 FTA IT 분야 협상결과 내용
표준, 검사, 상표표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중립성 원칙의 준수</li> <li>○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 규정에 부합하는 표준과 허가 기준의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li> <li>-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li> </ul>
지적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복제권의 저작권자 권리 인정</li> <li>○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시적 복제 및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li> <li>○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li> <li>-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li> </ul>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 철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 제한(49%)은 현행 제도 틀 유지</li> <li>○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되, KT와 SK텔레콤은 간접 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49%제한을 유지</li> <li>- 100%까지의 지분한도 확대는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li> <li>-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li> </ul>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전자상거래의 방해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li> <li>○ 전달매체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li> <li>○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li> </ul>
규제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체계의 불투명성과 구체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li> <li>- 표준 채택 전에는, 정부가 시장 자율적 해결가능성에 대해 검토·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며,</li> <li>- 표준 채택 후에는, 사업자의 추가 표준 허용 요구에 대해 검토·서면 응답하도록 함</li> </ul>

자료: 외교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07.

한미 FTA 타결 직전에 발표된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미 FTA 타결이 양국 무역관계에 미치는 변화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FTA IT분야 협상결과와 미 무역장벽보고서를 비교해 보면(〈표 2〉 참고) 미국 IT업계의 불만사항이 한미 FTA를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관계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 [1] 연합뉴스, “KOTRA, 한미 FTA로 양국 간 통상마찰 감소될 것”, 2007. 4. 9.
- [2] 외교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 4.
- [3]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05~'07.